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0397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나20397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7가단299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문중

피고, 피항소인 1. C

2. D

3. E

4. F

5. G

6.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변론 종결 2022. 5. 10.

판결 선고 2022. 7. 12.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6. 선고 2017가단299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취소, 피고 C는 남양주시 J 전 310m² 지상 제1심 판결문 별지 건물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09. 8. 21.부터 그 토지 인도시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 E, F, G, H은 그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 유

갑8(1981년 규약) 제7조, 제14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2011. 10. 31. 오후에 개최된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어 진행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I가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다른 사건들에서 법원은 I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7가합2219 판결 등)하였는데, 그 판결들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2019423 판결 등), 상고기각(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4459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변론까지 모두 종합해보더라도 I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 판결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항현찬

판사오성우